##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4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7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4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u>어려운 경우</u>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	제5조(위원의 해촉)
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③ (생 략)	사업 평가) ① ~ ③ (현행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같음)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	
(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u>수 없게 된 경우</u>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3.・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